

## 「메이커 활성화 (스페이스)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모집공고

제조창업의 촉진, 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터’ 운영을 통해 제조 창업 촉진 및 메이커 저변확대

#### □ 운영 방향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구현·공유 할 수 있는 메이킹 공간으로 전문가 서비스와 셀프제작 서비스로 구분하여 지원
  - (전문가 서비스) 전문가가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직접 지원
    - \* (서비스 유형)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등
  - (셀프제작 서비스) 창업자가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공간, 장비 등을 지원

#### 시제품 제작터(메이커 스페이스) 중점 추진방향

- (운영 활성화) 지방청 (광주·전남, 전북) 내 기구축된 시제품 제작터 (공간, 장비)를 활용하여 제조창업 저변확대 및 활성화
- (프로그램 강화) 장비·시설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창의성과 열정을 갖춘 사람들이 교류·협력하는 공간으로 구성

## □ 선정규모

- 총 2개 주관기관 선정 (중복하여 신청 불가, 소재지 제한없음)

| 시제품 제작터        | 주소                                        | 선정규모 |
|----------------|-------------------------------------------|------|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광주광역시 서우 천변우하로 391<br>((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 1개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br>(효자동 2가)           | 1개   |

## 2

## 지원내용

## □ 지원예산 및 내용

- (지원예산) 기관당 최대 230백만원 (지방청별 상이)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며, 20% 이상의 대응자금 (현금, 현물) 매칭 필수
  -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의 경우, 유희장비 관리\*를 위한 정부지원금 최대 70백만원 지원
  - \* 메이커 스페이스 반납 중요재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주관기관 수요조사 및 매칭, 장비 매각 등
  - 정부지원금을 통해 공간 임차비 또는 장비 대차료 납부 불가
  - 총사업비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응자금의 경우 협업기관과 함께 대응 가능

(단위 : 원)

| 구 분                | 정부지원금<br>(시제품 제작터) | 대응자금       |    | 정부지원금<br>(유희장비 관리) | 총사업비        |
|--------------------|--------------------|------------|----|--------------------|-------------|
|                    |                    | 현금         | 현물 |                    |             |
| 광주·전남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160,000,000        | 40,000,000 |    | 70,000,000         | 270,000,000 |
| 전북지방<br>중소벤처기업청    | 160,000,000        | 40,000,000 |    | -                  | 200,000,000 |

- (지원내용) 장비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차등 지원
  - \* 1년차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2년차 정부지원금 규모를 확정하여 협약을 체결
  - \*\* 1년차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협약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매년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80% 이내) 규모에 따라 주관기관 대응자금 (20% 이상)을 필수로 매칭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단독 또는 협업형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관리하는 주체 (협약 및 정산 등)
  - (협업기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
  - \* 인력 지원, 예산대응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모두 다음 각호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
  - 공고 게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 (단체 포함)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을 통해 사업증빙 및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과 연계된 '신한은행'을 통해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

## □ 신청 (선정) 제외 대상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모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을 제한 (각 기관의 대표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11.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11.1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 신청요건

### ① 공간 운영

- 기존 지방청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교육공간, 작업공간, 물품보관실, 휴게공간, 네트워킹공간, 사무실 등의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지방청별 상이)
- 선정된 주관기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공간에 대한 임차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하는 법인(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비 면제가능

\* **임차비 면제·감면 관련 법령 (참고):** 『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사용료의 감면), 제33조 (공공단체의 범위)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은 유희장비 관리를 필수로 운영해야 함
-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임차비는 공고와 함께 첨부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참고 자료 확인

## ② 장비 운영

- 기존에 보유한 지방청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의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함
- 선정된 주관기관은 『물품관리법』 제41조(대부의 제한)에 따라 장비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대부료 면제 가능

\* **대부료 면제·감면 관련 법령 (참고):** 『물품관리법』 제41조(대부의 제한),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대부료 등)

-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대부료는 공고와 함께 첨부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참고 자료 확인

## ③ 대응자금 및 수익금

- 대응자금은 시제품 제작터 운영에 한하여 인정되며 운영비(임차비, 대부료 등) 납부로도 사용 가능
- 총사업비의 20% (현금,현물) 이상을 매칭하고, 대응자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 대응자금 산정기준                                                                                                                                  |
|----|-----|--------------------------------------------------------------------------------------------------------------------------------------------|
| 현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자금 확보 증빙서류 제출</li> <li>- 통장 입금내역서, 대응투자 협약서 등</li> </ul>                                        |
| 현물 | 인건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 개월수 × 참여율</li> <li>- 근무년수 1년 미만 :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총액으로 산정)</li> </ul>        |
|    | 기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 5년('19. 10. 26 이후) 이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li> <li>* 기자재의 감가 상각 종료일이 협약 시작일보다 이전이여서는 안됨</li> </ul> |

\* 대응자금은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이 대응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외부 대응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대응자금 협약서에 '메이커 스페이스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

\*\*\* 지원기간중 매년 정부지원금에 맞춰 상기 비율의 대응자금을 필수로 매칭

- 주관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참가비, 재료비 등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터 운영비 (임차비, 대부료 등)에 사용 가능

#### ④ 운영역량 보유

- 주관기관은 소속 총괄책임자 (이하 PM)를 선정하여 참여
-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특정계층 폐쇄적 이용 불가)

#### ⑤ 운영 책임

- 선정 후 2년간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해야 함
- 메이커 발굴, 장비 등 기자재를 활용한 메이커 활동, 메이커 교육 및 행사 등 프로그램 지원 역할 수행
- 기존 시제품 제작터 역할 (전문가 서비스, 셀프제작 서비스) 필수 운영

#### ⑥ 기타사항

- 관리·전담기관에서 요구한 사업계획 및 운영관련한 보완을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에 반영

- 인력, 장비,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 (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

## 4

##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3. 10. 26 ~ 11. 15, 16:00까지 (21일간)

□ **신청기간** : '23. 11. 1 ~ 11. 15, 16:00까지 (14일간)

※ 16:00 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16:00 이전에 1단계 '저장'을 한 경우 같은 날 17:00 까지 서류의 추가 제출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 16:00 이후 신규 접수·신청 및 제출은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신청

\* 회원가입 → 신청서 입력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②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① K-startup 누리집 접속 → ② 회원가입\* (신청기관 대표자 명의) → ③ k-startup 로그인 → ④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⑤ 「시제품 제작터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 기관 모집공고」 클릭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⑦ 기본정보 입력 (1개 유형 선택) → ⑧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용량 제한 300MB) → ⑨ 제출 → ⑩ 신청 내역조회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현황)

\* 회원가입은 주관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정보에 주관기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단, 주관기관이 대학이면 '산학협력단장'이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 공고와 첨부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응자금 조달 서류 및 각종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제출

| 구분 | 서류명           |       | 비고                |
|----|---------------|-------|-------------------|
| 1  | 제출공문          |       | 용량<br>300MB<br>이내 |
| 2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1] |                   |
| 3  | 증빙자료 서식       | [붙임2] |                   |

\* 누락된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없고, 향후 평가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5

## 평가 및 선정

K-startup 누리집에 신청·접수한 사항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K-startup 누리집에 등록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

- 최종 신청·접수 전에는 필수로 K-startup 누리집에 등록한 정보와 제출하는 서류와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 제출
- K-startup 누리집의 등록 정보와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선정절차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단,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대면평가) PT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

\* 대면평가는 반드시 총괄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함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대면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예산조정)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 조정

< 선정평가 배점구간별 예산지원 규모 >

| 배점구간 | 90점 이상        | 90점 미만 ~ 80점 이상 | 80점 미만 ~ 70점 이상 | 70점 미만 ~ 60점 이상 |
|------|---------------|-----------------|-----------------|-----------------|
| 지원비율 | 100 %         | 90 %            | 80 %            | 70 %            |
| 지원금액 | 160,000,000 원 | 144,000,000 원   | 128,000,000 원   | 112,000,000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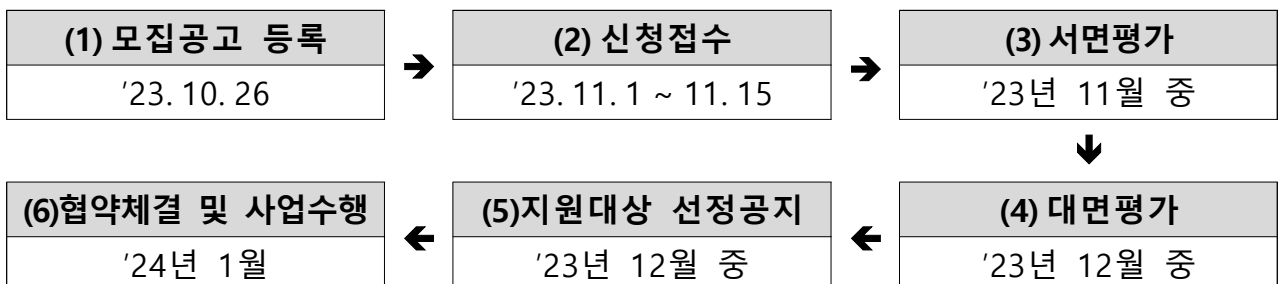
□ 평가기준

< 평가방법 및 절차 >

|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
| 사업이해도       | •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제조창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파급성 등                                                      |
| 운영전략        | • 중·장기 운영전략의 타당성(개방형 운영 및 제조 창업 지원 (투자, 판로, 고용, 매출 등), 안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전담조직 및 인력운용의 실현가능성 등                  |
| 사업관리        | •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차별성(교육,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실적 및 성과관리의 실현가능성, 예산편성(현금+현물)의 적절성 및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수익금, 대응자금 포함) 등 |
| 제조창업 및 성장지원 | • 시제품 제작 역량 및 초도물량 생산 연계 가능성                                                                               |
|             | • 지역 내 메이커공간과 창업지원기관 등 협업 계획의 우수성                                                                          |
|             | • 지역기반 연계 후속지원 등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
|             | •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 추진일정 (변동 가능)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취소·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정부지원금 환수·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결격사유 해당 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가능
- 사업신청은 주관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 주관기관의 장 (협업기관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발표평가는 대표기관의 PM이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확인 필요
-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인력, 장비, 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 (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7

## 문의처

### ☐ 사업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 (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4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기

### ☐ 지방청 문의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62-360-9133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63-210-6441